

**이사회**

**1. 제1차 회의**

일시: 2004. 3. 8(월) 오후 5:00

장소: 창민우구조

토론내용

- ① 각 위원회별 중점 추진 사업계획



**2. 제2차 회의**

일시: 2004. 6. 7(월) 오후 5:00

장소: 3D구조

토론내용

- ① 각 위원회별 중점 추진 사업계획
- ② 건축법령(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한 토의



**회장단 연석회의**

**제1차 회장단 회의**

일시: 2004. 4. 7(수) 07:00

장소: 진주한일관

토론내용

- ① 구조계산서 일련번호 부여
- ② 홈페이지 구축
- ③ MIDAS 프로그램 대응전략

**제2차 회장단 회의**

일시: 2004. 5. 12(수) 07:00

장소: 큰솔설렁탕

토론내용

- ① 정관수정
- ② 로고, 인장 공모

**제3차 회장단 회의**

일시: 2004. 6. 2(수) 07:00

장소: 사무국 (신사동 소재)

토론내용

- ① 심볼, 로고 업체디자인 샘플 5EA 검토, 토의
- ② 마이더스 협상단 구성
- ③ 건축법개정안 6. 17일까지 의견제시 필요

**위원회별 회의**

**기술중재위원회 1차 회의**

일시: 2004. 3. 3(수)

장소: 강릉옛날집

토론내용

- ① 기술직무와 관련한 분쟁의 중재 및 이와 관련업무에 관한사항
- ② 회원사의 기술용역가 장기미수에 대책에 관한 사항
- ③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및 자유게시판 질의관리
- ④ 외부에서 본회의 용역의뢰시 상담역

**기술중재위원회 2차 회의**

일시: 2004. 3. 22(월)

장소: 바른구조

**국제위원회 1차 회의**

일시: 2004. 3. 15(월) 18:30

장소: 단구조

토론내용

- ① 일본면진학회 회의 공지
- ② SEWC2006의 제1차 이사회 참여
- ③ 하중설계기준 영문판 제작 사업,
- ④ 새로운 나라와 교류 트고 자격제도 및 상호교류를 시도

**교육정보위원회 1차 회의**

일시: 2004. 3. 16(화) 07:00

장소: 오푸스 펠

토론내용

- ① 2004년도 교육정보위원회 사업계획에 관하여 토의
- ② 교육정보위원회 업무분장
- ③ 교육기관으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등록에 필요한 실제적인 문제 -관련법규, 현황등을 검토함.

**교육정보위원회 2차 회의**

일시: 2004. 3. 30(화) 07:00

토론내용

- ① 홈페이지 개선
- ② 세미나 및 현장 견학건

**교육정보위원회 3차 회의**

일시: 2004. 5. 6(목) 07:00

장소: 명아주 피닉스

**교육정보위원회 4차 회의**

일시: 2004. 6. 1(목) 07:00

장소: 오푸스 펠

**재정위원회 1차 회의**

일시: 2004. 2. 20(금) 18:00

장소: 창민우구조

토론내용

- ①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대책 논의

**재정위원회 2차 회의**

일시: 2004. 3. 19(금) 12:00

장소: 역삼역부근 음식점

토론내용

- ① 과학기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통화내용보고, 향후 대책 마련

**재정위원회 3차 회의**

일시: 2004. 3. 31(수) 18:00

토론내용

- ① 재정 확보 방안

**사업기획위원회 1차 회의**

일시: 2004. 3. 22(월) 17:00

장소: 사무국

토론내용

- ① 사업기획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수행계획
- ② 수탁용역업무에 대한 배분

**사업기획위원회 2차 회의**

일시: 2004. 4. 22(목) 17:00

장소: 사무국

토론내용

- ① 우리회 홍보팸플렛 원고 검토
- ② DM발송 주소록 검토
- ③ 수탁용역 연구과제 업무 절차서 검토

**총무단 1차 회의**

일시: 2004. 3. 17(수) 18:00

장소: 사무국

토론내용

- ① 총무단 사업계획의 상세추진계획 수립

**총무단2차 회의**

일시: 2004. 4. 27(화) 19:00

장소: 사무국

토론내용

- ① 우리회 로고 및 회지 이름 공개 모집
- ② 우리회지 배부 주소록 작성

**홍보편집위원회1차 회의**

일시: 2004. 3. 17(수)

장소: 사무국

토론내용

- ① 상견례
- ② 편집방향 토의
- ③ 2차회의시 편집위원 추천

**홍보편집위원회2차 회의**

일시: 2004. 4. 2(금)

장소: (주)선구조 기술사사무소

토론내용

- ① 편집위원추천
  - 당연직 편집 위원 - 김석구, 기희서, 서규석, 이재훈, 이도범
  - 추천 편집 위원 - 강석규, 김갑수, 박병순, 강동철, 원동현, 정희용, 박준범, 김용남, 강정호, 박창제
- ② 회지배포대상

**홍보편집위원회3차 회의**

일시: 2004. 4. 14(수)

장소: 사무국

토론내용

- ① 컨텐츠정리
- ② 컨텐츠별 담당임원

Contents	이번호 편집위원
표지사진(커버스토리포함)	서규석
칼 럼	이재훈
우리회 소식	박은희
특집	서규석
기술특집	김석구/정석재
구조시스템	기희서
하자 및 붕괴 사례	박광옥
법규신설 및 개정	최일섭
이모저모	기희서/김용남
다녀와서	기희서/김용남
용어해설	강석규
Q&A	김석구
추천도서	김대호
Cover Story	기희서
회원동정	박은희
연회비납부안내	박은희
회원정보(등록, 변경)안내	박은희
편집후기	이재훈



**홍보편집위원회4차 회의**

일시: 2004. 5. 21(금) 19:00

장소: 3D구조기술사사무소

토론내용

- ① 원고 접수 현황 파악 및 검토

**정부부처 주요정책에 대한 대응 현황**

- ① 기술사 자격 시험 민간 이양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2004.3)
- ②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한 우리회 의견 제시(2004.6.15)

## 건축법령(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리회 의견

개정(안)은 2004년 6월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우리회 의견입니다.

개 정	현 행	5/27 입법 예고	개정(안) 의견
<b>건축법 시행령</b>	<p>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li> <li>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li> <li>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li> <li>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li> <li>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li> <li>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li> <li>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li> <li>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li> <li>9. &lt;신설&gt;</li> <li>10. &lt;신설&gt;</li> </ol>	건축법 시행령	<p>1.-8. (현행과 같음)</p> <p>9. 보 없는 바닥구조의 바닥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p> <p>10. 적재하중이 증가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p>
<b>&lt;개정(안) 의견&gt;</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래 유행되고 있는 보 없는 바닥구조는 바닥구조가 보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대수선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li> <li>2) 적재하중이 증가하는 용도변경의 경우 하중초과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와 직결된다.</li> </ol>		
<b>&lt;기대효과&gt;</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리모델링의 경우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li> <li>2) 건축물의 구조안전의 확인에 대한 책임한계가 분명해진다.</li> </ol>		

개 정	연 행	5/27 입법 예고	개정(안)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현행과 같음)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 및 동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개정(안)의견>	1)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정하고자 하며, 건축물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른 항목(토목/설비)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 허가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제32조에 명시하였으므로 16층 이상 등의 건축물 구분은 무의미하다. 3)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의 전문위원회에서는 건축구조분야가 전문분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하였으나, 구조안전의 확인과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등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 전반의 규정에 있어서는 건축구조분야, 특히 건축구조기술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		
<기대요곡>	1)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책임한계가 분명해진다.		

개 정	연 행	5/27 입법 예고	개정(안)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사가 작성한 구조도(구조안전 확인대상 외의 건축물로서 구조기술자에게 구조설계를 의뢰한 경우의 구조도를 포함한다)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건축사가 작성한 구조도와 구조안전 확인대상외의 건축물로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설계를 의뢰한 경우의 구조도를 포함한다)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건축구조기술사가 서명날인한 도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의견>	1)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설계도서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해야 하므로 구조도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2)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건축물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른 항목(토목/설비)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그 자격이 인정된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3) 입법예고 대로라면 서명날인의 의무만 구조기술사에게 있고, 현장에서(시공자)는 건축사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알 필요도 없이,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 날인하여 출도된 것만 확인하고 시공하면 되므로, 건축구조기술사만 출도될 도면을 찾아다니며 날인할 책임만 주어진다. 따라서 시공자에게도 날인여부 확인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개 정	현 행	5/27 입법 예고	개정(안) 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법 시행규칙</b></p>	<p>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①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00.7.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3. 건축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ol>	<p>5/27 입법 예고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① (현행과 같음)</p>	<p>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① 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골조공사의 시공감리</li> <li>2. 거실용도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건본주택 포함)의 설계 및 골조공사</li> <li>3. 토공사로 인한 인접건축물의 안전성</li> <li>4.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조형물 및 제작물의 설치</li> <li>5.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구조, 철탑 등 특수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감리</li> <li>6. 영 제32조의 1항 및 2항의 건축물 보수보강 공사</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lt;개정(안) 의견&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골조공사시 건축사보나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는 구조안전의 확인이 곤란하므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시공감리의 협력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사의 시험과목에 구조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구조관련 공학과목(구조해석, 풍공학, 내진공학, 기초 및 부재 설계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건축 계획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모듈계획에 대한 지식밖에 요구되지 않는다. cf. 2002년도, 2003년도 건축사 자격시험의 구조계획 문제는 모두 모듈계획 능력을 검증하는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li> <li>- 또한,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가 분리되는 추세로 건축사를 목표로 하는 건축학과에서는 구조안전을 다루는 구조관련 공학과목이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다.</li> </ul> </li> <li>2) 많은 사람이 몰리는 분양목적의 건본주택은 붕괴시 대형인명사고로 직결되므로 이의 설계 및 시공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하다.</li> <li>3) 전도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제작설치물 및 조형물에 대한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에 발생한 부천 LG 백화점 보수공사의 경우 가설구조의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전에 구조안전의 확인이 되지 않은 좋은 사례이다.</li> <li>4) 토공사로 인해 인접건축물의 안전성이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하다.</li> </ol>		

개 정	연 행	5/27 입법 예고	개정(안) 의견
건축법 시행령	<p>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li> <li>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li> <li>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li> <li>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li> <li>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li> </ol>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층수가 6층이상인 건축물</li> <li>2.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li> <li>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li> <li>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li> </ol>	<p>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층-----</li> <li>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버섯재배사·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현행과 같음)</li> </ol>	<p>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①</p> <p>-----구조설계(구조계획·구조계산·구조도면작성·구조관련시방서 작성을 포함한다. 이하 “구조설계”라 한다.)</p> <p>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법예고안과 같음)</li> <li>2. (입법예고안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현행과 같음)</li> </ol>
	<p>&lt;개정(안) 의견&gt;</p> <p>1)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구조안전을 누가 확인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91조의3에서 규정하고자 함)</p> <p>2)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구조계산에 따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현장의 공사는 구조계산서가 아닌 구조도면에 의해 시공하게 되므로 구조도면이 잘못되었을 경우 많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구조계산은 구조설계의 한 과정으로서 구조 안전 확인을 위한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구조계산서에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구조상세를 구조도면과 구조관련시방서에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규정은 구조계산만을 하여도 구조안전이 확인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p> <p>&lt;개정(안) 의견&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제 시공에서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에 대해 구조안전을 확인하므로 양질의 품질확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다.</li> <li>2) 건축물의 구조안전의 확인에 대한 책임한계가 분명해진다.</li> </ol>		